2021 인천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지원 신청안내서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관계자(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지원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심의에서 제외되며,
관련 법규 등에 의거하여 이후의 지원 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AC 인천문화재단

2021년도 인천문화재단 지원공모 일정 한눈에 보기

지원 사업명		공고	접수기간	접수방법	교부 및 정산방법
예술표현활동		2020년 12월	2021년 1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공연장	2020년 12월	2021년 1월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e-나라도움
	공연단체	2021년 1월	2021년 2월		
신진예술가 기획지원 <바로 그 지원>		2021년 6월 예정	2021년 7~8월 예정	E-MAIL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인천형	유망예술인 창작활동지원	2021년 3월 예정	2021년 4월 예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중진예술인 창작활동지원				
	원로예술인 창작활동지원				
점점점 (문화예술특화거리)		2021년 1월	2021년 2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창작 공간 지원		2021년 4월	2021년 5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인천예술인 연구지원		2021년 4월	2021년 5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인천미술 활성화		2021년 하반기 예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www.ncas.or.kr

2021년도 인천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지원 공통안내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도입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행정업무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 **모든 지원신청-지원금 교부-지원금 정산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 **사업주체인 개인 혹은 단체명의 아이디 등록 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천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시스템을 통해 지원금을 교부받고, **사업종료 후 1개월 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를 통해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개편

- 2021년 지원사업 신청 시, 제공된 신청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정 양식에 준하여 작성되지 않거나 양식의 기록 내용 및 규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소개와 참여확인서를 통합하고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시행(2020.12.10.)
-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및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화로 사업 예산에서 고용보험료 책정이 필수입니다.

[적용대상]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②「예술인 복지법」제2조의 제2호[1]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③「예술인 복지법」제4조의 제4[2]에 따른 문화에술용역 계약을 하고 ④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과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납부를 위해 예술인 및 단체는 사업 실행 과정 내 반드시 **서면계약 체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P. 56 참고

■ 사업 주체인 개인예술인 및 단체 대표자에게 사례비 지급 가능

- 개인 예술인 및 단체 대표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 사례비(기획료, 연출료 등)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예술인 및 단체대표자 사례비는 총 **지원금의 10% 이내, 최대 200만원 이하** 범위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1) 「예술인 복지법」 제2조의 제2호, '예술인'이란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 사업주체의 본인 사례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차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산시 해당 신고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 상향

- 2021년 예술인 고용보험료 시행 및 사업주체의 사례비가 인정됨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고려하여 2021년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소폭 상향하였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료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성실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운영관리 규칙 제정에 따른 정산 지연 조치 변경

- 기존의 경우 정산 지연 제출에 따른 제재 조치로 3년 이상 지원 사업이 불가능 하였으나, 2020년부터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른 조치를 세분화 하여 적용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P. 53** 참고

■ 개인 및 단체 예술가 자부담 의무 면제 (2017년부터 시행)

- '개인 및 단체'가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자부담 의무를 면제합니다.
- 자부담 책정 시, **자부담 전액**을 증빙해야 합니다.

■ 단체의 경우, 법적 등록(신고) 필수

- 중앙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사례비 원천징수가 의무화되어, 단체의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보유해야 합니다.
- 프로젝트 팀의 경우, ①단체등록을 하여 등록증을 발급받거나, ②대표자가 개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역 세무서, 3~7일 소요)

■ 사업의 집행과 시기

- 2021년 3월~12월 중 **인천광역시**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금은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사업 변경이 가능하며 다음 연도 지원 불이익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원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안내

- 2021 인천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 지정양식
-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서약서 : 지정양식
- 공통 자격기준(인천연고)에 따른 증빙제출자료 : 개별 선택

■ 지원신청 제외 주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 개인(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2020년도 지원 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개인
  ※ 2020년도 지원 대상 결정 통보 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변경 및 사업 포기 건의 경우 제외
  ※ 단, 문화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 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화예술지원사업 유형에 한정함
  ※ 2020년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 제외
- 2020년도까지 사업지원을 받고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심의 전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 개인**
  ※ 단, 시·도(문화재단)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문예진흥기금 및 지역협력형사업으로 교부된 지원금의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소정 기한을 지나 지원신청 접수 기한 마감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개인

■ 지원신청 불가 사업

- 동일 사업에 대하여 직접 지원 사업 및 다른 세부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동일여부는 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비교 대상 사업 간 주요내용, 인적·물적 구성요소, 동일요소의 사업 내 비중 등을 종합하여 판단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예술 작품성이 희박하고 종교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

■ 지원신청 주의사항

- 2021년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단체지원>에 선정된 단체는 〈예술표현활동지원〉에 중복/지원 선정이 불가합니다.
- 저작권 관련 문제(표절 또는 모방) 발생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보조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수익금을 해당 지원 사업에 재투여한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아도 됨)
- **사업별·장르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사업에 예외사항이 있으니 사업별 세부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2021 예술표현활동지원 사업개요 ·····
2021 예술표현활동지원 신청안내 ·····

2021 예술표현활동지원 사업별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
1. 문학 ·····
2. 시각예술 ·····
3. 공연(연극, 음악, 무용)예술 ·····
4. 전통예술 ·····
5. 국제교류 ·····
6. 작은 예술공간 지원 ·····
7. 인천 문화예술 연구지원 ·····
8. 역량강화 ·····

지원신청서 양식 ·····
지원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리규정 ·····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 운영관리규칙 ·····

2021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 공고 일정 안내 ·····

2021년
인천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지원 사업개요

□ 2021년 인천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지원 사업개요

사업명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사업유형	금액(만원)
예술 표현활동 지원	문학		• 개인: 창작집(창작시집, 소설집 등) 단행본 발간	최대 600
			• 단체: 동인지 등 발간	
	시각예술		• 개인전	최대 800
			• 단체전 또는 기획전	최대 2,200
			• 시각 관련 출판	최대 600
	공연예술	연극	• 창작극, 번역극, 마임, 뮤지컬 등	최대 2,200
			• 연극 관련 축제형 사업	최대 3,200
			• 연극 관련 출판	최대 600
		음악	• 순수창작곡 앨범제작	최대 400
			• 기악, 관혁악 등 • 대중음악 콘서트(순수 창작물로 제한)	최대 1,200
			• 음악 관련 축제형 사업	최대 2,200
			• 오페라(음악극)	최대 4,200
			• 음악 관련 출판	최대 600
		무용	•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등	최대 2,200
			• 무용 관련 축제형 사업	최대 3,200
			• 무용 관련 출판	최대 600
	전통예술	시각	• 개인전	최대 800
			• 단체전 또는 기획전	최대 2,200
		공연	• 창극(가무극)	최대 2,200
			• 전통연희, 국악 등	
			• 축제형 사업	
	국제교류		• 작가/작품의 국내외 입출국을 전제로 하는 국제교류 활동	최대 1,000
			• 국제교류를 준비하는 예비 활동	최대 600
	작은예술 공간 지원		• 작은 예술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 일회성이 아닌 시리즈 프로그램에 한함 (예시: 기획공연 시리즈, 기획전시, 기타 예술 프로젝트)	최대 2,200
	인천 문화예술 연구지원		• 인천과 관련한 문화예술 현황조사, 지역탐구, 공간연구, 프로젝트 기획 등 연구·조사 가능한 주제	최대 1,000
	역량강화		• 개인 : 국내 연수, 주요 행사 참가	최대 500
			• 단체 :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최대 800

2021년
인천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지원 신청안내

지원신청 안내- 공통 사항

해당 페이지는 지원신청 공통 사항을 안내하며, 세부 사업(장르별) 안내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h>공통기준
(택1)</th><th>개인</th><th>단체</th></tr>
<tr><td rowspan="2">자격기준
1</td><td>「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자</td><td>공고일 기준 인천 내 등록 단체</td></tr>
<tr><td>[증빙제출 자료]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의 잔여 유효기간이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며, 인적사항의 주소지가 인천이어야 함
- 증명 분야가 각 지원 분야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됨
※ 인적사항의 주소지가 인천이 아닌 경우, 자격기준 2의 [증빙제출 자료] ①, ② 중 선택 증빙 가능</td><td>[증빙제출 자료] 단체 등록증
- 전문예술법인, 비영리법인 등
- 단, 등록 소재지는 인천이어야 함</td></tr>
<tr><td rowspan="2">자격기준
2</td><td colspan="2">신청자 본인(개인) 또는 단체 대표자가 아래의 인천 연고 기준 중 하나라도 부합하는 경우
가. 인천 출생
나. 인천 소재 학교 졸업/재학자
다.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
라. 인천 내 활동실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td></tr>
<tr><td colspan="2">[증빙제출 자료] 신청자 본인(단체 대표자)의 인천 연고 기준 택 1
①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②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활동실적 증빙 자료(양식 별첨) : 2019~2020년에 3회 이상 인천 내 활동실적
※ 개인의 경우, 신청자 본인 / 단체의 경우, 단체의 실적을 제출</td></tr>
<tr><td rowspan="2">자격기준
3</td><td rowspan="2"></td><td>인천 소재 문화예술공간(국·공립 제외)</td></tr>
<tr><td>[증빙제출 자료] 인천 소재 단체 공간 시설의 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문화예술시설 등록증 등</td></tr>
</table>

필수 제출서류

1. 2021 인천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 지원신청서 : 지정양식
2.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서약서 : 지정양식
3. 공동 자격기준(인천연고)에 따른 증빙제출자료 : 개별 선택
4. 지원사업 분야(장르)별 필수 제출서류 : 세부안내 참고

- 분야별로 안내되는 제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스캔/저장한 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 활동증빙자료 : HWP, DOC, PPT, PDF파일 형식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동영상 : 인터넷 업로드 후, URL 링크를 첨부양식 내에 기재

심의 기준 및 절차

- **1차 : 행정심의**
  - 신청자격 부합여부 (제출된 서류, 증빙 제출자료 점검)
  - 전년도 사업 평가 반영(전년도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에 한함)
- **2차 : 전문가 서류 심의**
  - 프로그램의 완성도
  - 사업수행역량 및 전문성, 활동실적
  - 지원목표와의 부합여부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 사업비 예산 편성의 타당성
  - 관객(참여자)개발을 위한 홍보계획 등
- **3차 : 전문가 인터뷰(필요한 경우 프레젠테이션) 심의**
  - 사업내용에 대한 심층면접 시행

※ 인터뷰심의는 서류심의 통과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인터뷰심의 후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인터뷰심의 방식이 온라인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의 발표

선정심의 진행 2021년 2월
선정결과 공고 2021년 3월 중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온라인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접수기간 : 2021. 1. 11.(월) 09:00 ~ 2021. 1. 22. (금) 18:00 한
17:59을 넘으면 제출이 불가능 하오니, 기한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절차 안내 : 별첨1
-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신청안내 영상 바로가기 : https://youtu.be/I9EW1LtEz0M
- NCAS 회원가입 영상 바로가기 : https://youtu.be/VIogSt2fYeg

기타사항

- 선정사업에 대한 교부신청 및 정산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사용합니다.
- 심의진행 일정은 각 사업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인터뷰심의 대상자는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입니다.
- 지원 선정된 예술인 및 단체는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리규정 및 지원금 운영관리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원사업 진행 도중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해당 사업을 중지하거나 폐지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향후 타 지원사업 심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단관계자(내부 임직원 및 외부관계자)에게 지원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심의에서 제외합니다.
- 선정 확정된 사업이라도 허위사실 판명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 선정발표 전 진행되는 사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선정 이후 주요 참여자 변경 시, 변경조치기준표에 따라 지원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뒷자리(7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사업 관련 홍보물 및 발간물에는 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 후원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사업은 추후 사업수행 시 재단이 실시하는 참관 및 현장평가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 예술표현활동지원 선정대상자를 위한 교부신청 및 정산 설명회는 추후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1:1 안내창구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안내창구는 **사전 예약/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1:1 개별 안내만을 진행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21. 1. 4.(월) ~ 1. 22.(금)
  -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12시, 오후 1시 ~ 오후 5시
  - 장소 : 인천 중구 참외전로 100(전동 2-5) 청년문화창작소 3층 공유판(구 인천여고)
  - **안내창구 방문 신청 바로가기 (http://naver.me/GfZnIjMP)**

문의처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부
☎ 032-773-3817 (문학, 무용)
☎ 032-773-3811 (시각, 연극)
☎ 032-773-3813 (전통, 국제교류)
☎ 032-773-3807 (음악)
☎ 032-773-3814 (작은예술공간)
☎ 032-773-3815 (역량강화, 예술인지원센터)
☎ 032-773-3809 (인천문화예술연구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지원사업 접수기간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안내서를 상세히 살펴보신 후, 궁금한 사항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예술표현활동지원 사업별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1. 문학

지원목적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문학작품 출판 지원
대상사업	• 2021년 3월부터 12월 5일까지 출판이 가능한 사업 • 창작집, 동인지 등 문학 분야의 단행본 발간 사업
지원규모	최대 600만원

신청자격		**개인**	**단체**
영역필수 자격기준		국내 신춘문예 및 문학 전문매체에 등단한 문인 또는 개인 창작집을 출간한 문인	
공통 자격 기준 (택1)	**자격 기준 1**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확인이 완료된 자	공고일 기준 인천 내 등록 단체
		[증빙제출 자료]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의 잔여 유효기간이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인적사항의 주소지가 인천이어야 함. - 증명 분야가 각 지원 분야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됨. ※ 인적사항의 주소지가 인천이 아닌 경우, 자격기준 2의 [증빙제출 자료] ①, ② 중 선택 증빙 가능	**[증빙제출 자료] 단체 등록증** - 전문예술법인, 비영리법인 등 - 단, 등록 소재지는 인천이어야 함
	자격 기준 2	신청자 본인(개인) 또는 단체 대표자가 아래의 인천 연고 기준 중 하나라도 부합하는 경우 가. 인천 출생 나. 인천 소재 학교 졸업/재학자 다.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 라. 인천 내 활동실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	
		[증빙제출 자료] 신청자 본인(단체 대표자)의 인천 연고 기준 택 1 ①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②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활동실적 증빙 자료(양식 별첨) : 2019~2020년에 3회 이상 인천 내 활동실적 ※ 개인의 경우, 신청자 본인 / 단체의 경우, 단체의 실적을 제출	

유의사항	•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제작기간 내에 원고를 완성하지 않거나 또는 제작을 중단·포기하는 경우 - 선정 당시 계획한 내용과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 - 타인의 작품으로 응모한 경우 • 기존 작품을 표절 또는 모방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최종 선정 및 출판 후 표절이 확인된 경우도 포함) ▪ 해당 사업에 대한 주요사항 변경 시, 변경조치기준표에 따라 지원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시낭송회, 작가와의 대담, 시민동호회의 책자 발간 등의 시민프로그램은 시민문화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개인**	①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및 작성방법 참고)
		②	• **제출 원고** : 발간 작품집 수록 예정의 무기명 원고로서 문예지, 전문잡지 등에 발표한 작품은 응모할 수 있으며, 이전 발간된 개인 창작집 및 단행본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함. 장르 / 시·시조·동시 / 소설·동화 / 문학평론(비평)·수필 분량 / 20편 이상 / 단편 : 3편 이상, 중편 : 2편 이상, 장편 : 1편 이상 / 5편 이상 **※ 완성된 출판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원고를 파일형태(hwp, doc, pdf)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자격 증빙 제출자료**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신춘문예, (신인)문학상 등 : 당선자, 당선자 목록이 기재된 발표지면 사본 - 문예지 : 문예지 표지 사본, 작품제목, 작가명이 명기된 목차 사본 - 개인 창작집 : 창작집 표지 사본 **※ 해당서류의 사본을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
		④	**인천연고 증빙 제출자료** : 주민등록등·초본, 졸업/재학증명서 등 **※ 해당 인천연고 증빙 서류 혹은 활동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
	단체	①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및 작성방법 참고)
		②	**출간 계획서** : 발간(예정)물의 목차, 필진 등 (확정된 기획 및 구성 내용 제출) **※ 완성된 출판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 확정된 필진의 개인소개 및 참여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최근 2년 내 대표적인 발간문 1부 **※ 발간문의 겉표지 1면, 목차 1면, 발행일 표시페이지 1면을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해당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

2. 시각예술

지원목적	시각예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창작활동 지원
대상사업	• 시각예술분야 개인전, 단체전 또는 기획전, 시각 관련 출판 지원 사업 •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가능한 사업
지원규모	**개인전** : 최대 800만원 **단체전 또는 기획전** : 최대 2,200만원 **시각관련 출판** : 최대 600만원

신청자격		**개인**	**단체**
영역필수 자격기준			최근 3년(2018~2020년)내 3회 이상 창작활동 실적이 증명되는 문화예술 단체
공통 자격 기준 (택1)	**자격 기준 1**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확인이 완료된 자	공고일 기준 인천 내 등록 단체
		[증빙제출 자료]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의 잔여 유효기간이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인적사항의 주소지가 인천이어야 함. - 증명 분야가 각 지원 분야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됨. ※ 인적사항의 주소지가 인천이 아닌 경우, 자격기준 2의 [증빙제출 자료] ①, ② 중 선택 증빙 가능	**[증빙제출 자료] 단체 등록증** - 전문예술법인, 비영리법인 등 - 단, 등록 소재지는 인천이어야 함
	자격 기준 2	신청자 본인(개인) 또는 단체 대표자가 아래의 인천 연고 기준 중 하나라도 부합하는 경우 가. 인천 출생 나. 인천 소재 학교 졸업/재학자 다.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 라. 인천 내 활동실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	
		[증빙제출 자료] 신청자 본인(단체 대표자)의 인천 연고 기준 택 1 ①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②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활동실적 증빙 자료(양식 별첨) : 2019~2020년에 3회 이상 인천 내 활동실적 ※ 개인의 경우, 신청자 본인 / 단체의 경우, 단체의 실적을 제출	

유의사항	• 작품집, 도록 등의 시각관련 출판 사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 해외에서 개최하는 전시 등과 같은 국제교류 활동 성격의 사업은 〈예술표현활동-시각분야〉 대신 〈예술표현활동-국제교류〉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예술축제의 경우 〈예술표현활동〉의 해당 장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문화축제, 시민 문화예술 동호회 회원전은 시민문화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전'이나 '기획전'의 경우 주요 기획자나 참여 작가 변경 시, **변경조치기준표**에 따라 지원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개인**	①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및 작성방법 참고)
		②	**전시계획서 1부** (자유형식)
		③	**최근 3년간의 포트폴리오 1부**
		④	**신청자격 증빙제출 자료 (인천연고, 단체증빙, 활동 증빙)**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단체등록증, 활동실적증빙자료 등
	단체	①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및 작성방법 참고)
		②	**전시계획서 1부** (자유양식)
		③	**전시기획자의 개인소개 및 참여확인서 1부**
		④	**주요참여자 개인소개 및 참여확인서 1부**
		⑤	**신청자격 증빙제출 자료 (인천연고, 단체증빙, 활동증빙)** 주민등록등·초본, 단체등록증, 활동실적증빙자료 등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NCAS 사이트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표현활동지원〉에서는 '단체'의 연례적인 협회전, 정기전, 회원전의 지원을 지양합니다. 단, 단체가 지원 신청을 할 경우 회원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기획전', '주제전'형태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획전'에는 전시기획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전시기획자의 개인소개 및 참여확인서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 '기획전'을 개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가 전시기획자 본인이어야 하며, 이 경우 전시기획자와 작가가 동일인은 불가합니다. - 단체가 '기획전'을 신청할 경우, 단체 소속이 아닌 외부 기획자를 섭외할 수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는 파일형태(이미지도록, 브로슈어, 영상자료 등)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전 신청의 경우 대표작품 이미지를 최소 10매(전체 제출이미지 용량 500MB 이하)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연(연극, 음악, 무용)예술

지원목적	공연예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창작 발표 활동을 지원

대상사업

•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연이 가능한 사업

구분	대상사업	지원규모(만원)
연극	- 창작극, 번역극, 마임, 뮤지컬 등	최대 2,200
	- 연극 관련 축제형 사업	최대 3,200
	- 연극 관련 출판	최대 600
음악	- 순수창작곡 앨범제작	최대 400
	- 기악, 관현악 콘서트 - 대중음악 콘서트(순수 창작물로 제한)	최대 1,200
	- 음악 관련 축제형 사업	최대 2,200
	- 오페라(음악극)	최대 4,200
	- 음악 관련 출판	최대 600
무용	-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등	최대 2,200
	- 무용 관련 축제형 사업	최대 3,200
	- 무용 관련 출판	최대 600

※ 창작 초연작품과 레퍼토리를 위한 기존작품의 재공연(번역, 번안, 재구성 작품)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창작일 경우 극작가 또는 작곡가 등의 확인서 및 대본, 시나리오, 악보, 총보, 저작권 등록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개인	단체
영역필수 자격기준			최근 3년(2018~2020년)내 3회 이상 창작활동 실적이 증명되는 문화예술 단체
공통 자격 기준 (택1)	**자격 기준 1**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확인이 완료된 자	공고일 기준 인천 내 등록 단체
		[증빙제출 자료]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의 잔여 유효기간이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인적사항의 주소지가 인천이어야 함. - 증명 분야가 각 지원 분야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됨. ※ 인적사항의 주소지가 인천이 아닌 경우, 자격기준 2의 [증빙제출 자료] ①, ② 중 선택 증빙 가능	**[증빙제출 자료] 단체 등록증** - 전문예술법인, 비영리법인 등 - 단, 등록 소재지는 인천이어야 함

	자격 기준 2	신청자 본인(개인) 또는 단체 대표자가 아래의 인천 연고 기준 중 하나라도 부합하는 경우 가. 인천 출생 나. 인천 소재 학교 졸업/재학자 다.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 라. 인천 내 활동실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
		[증빙제출 자료] 신청자 본인(단체 대표자)의 인천 연고 기준 택 1 ①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②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활동실적 증빙 자료(양식 별첨) : 2019~2020년에 3회 이상 인천 내 활동실적 ※ 개인의 경우, 신청자 본인 / 단체의 경우, 단체의 실적을 제출

유의사항

- 2021년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에 선정된 단체는 〈예술표현활동지원〉에 중복지원 선정이 불가합니다.
- **국제교류 활동 성격의 사업은 〈예술표현활동지원-공연분야〉 대신 〈예술표현활동지원-국제교류분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 등으로 이루어진 동호회의 발표활동은 시민문화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 관련 축제형 사업 중 전문예술축제의 경우, 〈예술표현활동지원〉장르에 맞는 분야로 신청하시고, 시민문화제 등의 경우에는 시민문화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에 대한 주요사항 변경 시, 변경조치기준표에 따라 지원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시 신청 작품의 저작권 관련 확인서류(계약서) 제출을 확인하여 저작권 사용 계약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및 작성방법 참고)
	②	**동영상 자료 1부** (필수, 5~10분 분량으로 인터넷 업로드 후 URL 링크 기재)
	③	(음악) **악보 1부, 공연 프로그램 1부** (창작앨범) **제작계획서 1부, 악보 1부** (무용) **프로그램 1부, 안무계획서 또는 대본 1부** (연극) **프로그램 1부, 시놉시스 또는 대본 1부** (작품집 출판) **작품제목, 작가명이 명기된 목차와 원고 1부**
	④	**주요참여자 개인소개 및 참여확인서** ※ 장르별로 안내되는 주요 참여자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⑤	**신청자격 증빙제출 자료(인천연고, 단체증빙, 활동증빙)**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단체등록증, 활동실적증빙자료 등

공연분야 신청서작성 참고사항

- 작품 주제 및 연출·안무의도 등의 핵심 개념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서 위주로 작성하되 필요 시 별지 사용 가능합니다.)
- 공연예술-음악 분야의 관현악, 실내악 등의 경우 악기편성, 협연, 독창, 합창파트 구성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작품해설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예술-무용 분야의 경우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과 몇 개의 장면과 막으로 구성되는지를 적고, 각 장면에서의 주요 개념, 정조, 분위기 등과 장면들과의 관계설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홍보, 관객개발 등을 위한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이 공연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주가 되는 공연이어야 합니다. (독창, 독무, 독주회 등)
- 주요 제작진 및 출연진 명단 작성 시 참고사항
  - 역할 란에는 연출자, 안무자, 지휘자, 공연스텝, 중요 출연배역 순으로 기재
  - 교향악단, 실내악단, 합창단 등의 경우 악기 파트별·성역별로 기재
  - 무용의 경우 비고란에 주요 무용수 활용계획
- 인원이 많을 경우 주요 참여자(주연급)만 적고, 나머지는 인원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통예술

지원목적	전통예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

대상사업

-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시 및 공연이 가능한 사업

구분	대상사업		지원규모(만원)
전통예술 시각	• 개인전(개인)		최대 800
	• 단체전 또는 기획전(단체)		최대 2,200
전통예술 공연	• 창극(가무극)	개인 또는 단체	최대 2,200
	• 전통연희, 국악 등		
	• 축제형 사업		

※ 시각분야 '단체전' 신청 시 전시기획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개인	단체
영역필수 자격기준			최근 3년(2018~2020년)내 3회 이상 창작활동 실적이 증명되는 문화예술 단체
공통 자격기준 (택1)	자격기준 1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확인이 완료된 자	공고일 기준 인천 내 등록 단체
		[증빙제출 자료]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의 잔여 유효기간이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인적사항의 주소지가 인천이어야 함. - 증명 분야가 각 지원 분야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됨. ※ 인적사항의 주소지가 인천이 아닌 경우, 자격기준 2의 [증빙제출 자료] ①, ② 중 선택 증빙 가능	**[증빙제출 자료] 단체 등록증** - 전문예술법인, 비영리법인 등 - 단, 등록 소재지는 인천이어야 함
	자격기준 2	신청자 본인(개인) 또는 단체 대표자가 아래의 인천 연고 기준 중 하나라도 부합하는 경우 가. 인천 출생 나. 인천 소재 학교 졸업/재학자 다.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 라. 인천 내 활동실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	
		[증빙제출 자료] 신청자 본인(단체 대표자)의 인천 연고 기준 택 1 ①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②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활동실적 증빙 자료(양식 별첨) : 2019~2020년에 3회 이상 인천 내 활동실적 ※ 개인의 경우, 신청자 본인 / 단체의 경우, 단체의 실적을 제출	

유의사항

- 인천광역시 시비 보조를 받는 무형문화재전승공연 사업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개인이 공연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주가 되는 공연이어야 합니다. (독창, 독무, 독주회 등)
- 전시분야
  - 시민 문화예술 동호회의 회원전 등은 시민문화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전'의 경우 참여 작가 변경 시, 변경조치기준표에 따라 지원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분야
  - 2020년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에 선정된 단체는 〈예술표현활동지원〉에 중복 지원 선정이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 관련 축제형 사업 중 전문예술축제의 경우, 〈예술표현활동〉 장르에 맞는 분야로 신청하시고, 시민문화제 등의 경우에는 시민문화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 시 신청 작품의 **저작권 관련 확인서류(계약서)** 제출을 확인하여 저작권 사용계약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해당 사업에 대한 주요사항 변경 시, 변경조치기준표에 따라 지원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공통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및 작성방법 참고)
		신청자격 증빙제출 자료(인천연고, 단체증빙, 활동증빙)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단체등록증, 활동실적증빙자료 등 **※ 해당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전시 (개인)	**전시계획서 1부** (자유양식)
		포트폴리오 1부
	전시 (단체)	**전시계획서 1부** (자유양식)
		포트폴리오 1부
		전시기획자와 주요 참여자의 개인소개 및 참여확인서
	공연	**동영상 자료 1부** (재공연일 경우, 인터넷 업로드 후 URL 링크 기재)
		주요 참여자의 개인소개 및 참여확인서
		(연극) **시놉시스 또는 대본 1부** (음악) **공연 프로그램 1부** (무용) **안무 계획서 또는 대본 1부**

전통예술분야 신청서작성 참고사항	• 작품 주제 및 연출·안무의도 등의 핵심 개념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서 위주로 작성하되 필요 시 별지 사용 가능합니다.) • 전통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악기편성, 협연, 독창, 합창파트 구성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작품해설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과 몇 개의 장면과 막으로 구성되는지를 적고, 각 장면에서의 주요 개념, 정조, 분위기 등과 장면들과의 관계 설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홍보, 관객개발 등을 위한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이 공연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주가 되는 공연이어야 합니다. (독창, 독무, 독주회 등) • 주요 제작진 및 출연진 명단 작성 시 참고사항 - 역할 란에는 연출자, 안무자, 공연스텝, 중요 출연배역 순으로 기재 - 전통 음악 공연의 경우 악기 별로 기재 - 전통 무용 공연의 경우 비고란에 주요 무용수 활용계획(무용수의 중요한 이미지, 테크닉, 작품기여도 등) 기재 • 인원이 많을 경우 주요 참여자(주연급)만 적고, 나머지는 인원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국제교류

지원목적	인천에서 개최되는 민간차원의 국제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예술인(단체)의 창작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문화예술 수준의 국제화 도모
대상사업	• **지원분야** : 문화예술 전 분야(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 **지원대상** : 작가/작품의 국내외 입·출국을 전제로 하는 국제교류와 이를 준비하는 예비 활동 • **사업기간** :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가능한 사업
지원규모	**작가/작품의 입출국을 전제로 하는 국제교류 활동:** 최대 1,000만원 **국제교류를 준비하는 예비 활동:** 최대 600만원

신청자격		**개인**	**단체**
영역필수 자격기준			최근 3년(2018~2020년)내 3회 이상 창작활동 실적이 증명되는 문화예술 단체
공통 자격 기준 (택1)	**자격 기준 1**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확인이 완료된 자	공고일 기준 인천 내 등록 단체
		[증빙제출 자료]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단, 확인서의 잔여 유효기간이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며 인적사항의 주소지가 인천이어야 함. - 증명 분야는 각 지원 분야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 인적사항의 주소지가 인천이 아닌 경우, 자격기준 2의 [증빙제출 자료] ①, ② 중 선택 증빙 가능	**[증빙제출 자료] 단체 등록증** - 전문예술법인, 비영리법인 등 - 단, 등록 소재지는 인천이어야 함
	자격 기준 2	신청자 본인(개인) 또는 단체 대표자가 아래의 인천 연고 기준 중 하나라도 부합하는 경우 가. 인천 출생 나. 인천 소재 학교 졸업/재학자 다.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 라. 인천 내 활동실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	
		[증빙제출 자료] 신청자 본인(단체 대표자)의 인천 연고 기준 택 1 ①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②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활동실적 증빙 자료(양식 별첨) : 2019~2020년에 3회 이상 인천 내 활동실적 ※ 개인의 경우, 신청자 본인 / 단체의 경우, 단체의 실적을 제출	

유의사항	• 〈국제교류지원〉의 경우, 국제교류 상대 단체와의 협력 정도, 향후 활동에 대한 기여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1회성 한인회 초청 행사 등의 사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제 아트페어 참가 등 참가비를 지불하는 상업적 교류행사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개인, 친목 단체의 초청행사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해외 교류기관 변경 시 지원금 취소 사유**가 되므로 확정된 기관과의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에 대한 주요사항 변경 시, 변경조치기준표에 따라 지원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웃바운드형 국제교류 사업의 경우에는 확정된 사업에 한해 작품 항공운송만을 위한 교류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 입출국 시,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조치에 따른 **자가격리 비용은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및 작성방법 참고)
	②	**주요 참여자의 개인소개 및 참여확인서**
	③	**초청기관(단체)의 소개 자료**
	④	**해당 프로그램 참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
	⑤	**참가 프로그램 및 행사와 관련된 자료** (팸플릿, 각종 안내자료 등)
	⑥	**지원자 개인/단체의 예술활동 실적 자료**
	⑦	**신청자격 증빙제출 자료(인천연고, 단체증빙, 활동증빙)**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단체등록증, 활동실적증빙자료 등 **※ 해당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

6. 작은 예술공간 지원

지원목적	인천 소재 작은 예술공간 예술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대상사업	•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작은 예술공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기획공연 시리즈, 기획전시, 기타 예술프로젝트 등) • 작은 예술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유형에 한함(일회성이 아닌 시리즈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비(사업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공간운영비(임차료, 소모성 기자재 구입 등)는 전체 예산의 20% 이내 지원가능 ※ 국비/시비 지원을 받아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는 예술공간,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운영하는 공간은 신청 불가합니다. 예)인천시 '천 개의 문화오아시스' 등 ※ 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에 선정된 공간의 경우 공간운영비 항목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공연장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간의 경우 공간운영비 신청은 불가합니다. ※ 대관전용 공연장 및 전시장 운영단체(개인)는 지원신청이 가능하나, 주목적이 상업적이거나 공간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 개인은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규모	• 최대 2,200만원

신청자격	**소극장**	**복합전시공간**
영역필수 자격기준	인천에 소재한 150석 내외의 예술공간을 운영하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	인천에 소재한 복합전시공간을 운영하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
영역필수 자격기준	1. 최근 2년(2019~2020년)간 해당 예술공간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중 50% 이상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문화예술 행사여야 함 ※ 대관 프로그램은 포함할 수 없음 2. 2021.12.까지 공간의 운영 및 사용이 가능해야 함 ※ 단,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연장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함	

유의사항	• 2021년 12월까지 공간운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임대차계약서) • 공간운영비 내 자산 구입은 불가합니다. • 임차료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지원신청서 예산계획 시 임차료가 명시된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사 지원사업을 통한 동일 공간,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해당 사업에 대한 주요사항 변경 시, 변경조치기준표에 따라 지원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작은예술공간의 경우 반드시 별도 추가 양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5] 공간소개서 45P.**

제출서류	**공통**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및 작성방법 참고)
		개인/단체소개서 (양식)
		공간소개서 (양식)
	①	**2021년 12월까지 공간운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임대차계약서 등)
	②	**공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③	**활동실적증빙자료 : 양식 46P 공연운영 실적**
	추가서류	**공연장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7. 인천 문화예술 연구지원

지원목적	인천지역 문화예술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연구모임을 지원하여 참신한 기획 및 이론 발굴

대상사업	• 인천지역 문화예술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연구모임 활동 • 2021년 12월 까지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 • 연구책임자는 전문이론가, 비평가, 큐레이터, 창작자, 교육자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 활동 포트폴리오 제출 형식은 인쇄물(서적 도록 팸플릿 등), 영상자료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단체소개서 및 참여확인서는 지원신청서 상의 양식을 이용하시되, 필요한 경우 별도 자유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연구지원금** • 모임당 최대 1,000만원 지원 • 활동비 사용 범위 : 외부 전문가 사례비, 워크숍 진행비, 인쇄비, 자료구입비 (전체 예산의 15% 범위 내) 등 ※ 지원금액과 지원내용은 제출된 계획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인천 문화예술 관련 연구 모임**
영역필수 자격기준	1. 모임 구성 : 장르 불문, 연구자/기획자/창작자/교육자 등 구분 없음 2. 구성 인원 : 신청자 포함 최소 2인, 최대 5인 구성 3. 운영 방식 : 오프라인 학습 및 연구 활동 4. 활동 기간 : 2021.3. ~ 12.(10개월) 5. 연구 실적 : 연구 모임의 구성원 중 최근 3년(2018~2020년)내 인천에서 2회 이상의 문화예술 연구 실적을 증명해야 함 ※ 연구 실적의 기준은 논문, 비평문, 문화예술기획 등 이론적 활동에 근거한 모든 실적임
공통 자격기준	연구 모임의 대표자(책임자)가 아래의 인천 연고 기준 중 하나라도 부합해야 함 가. 인천 출생 나. 인천 소재 학교 졸업/재학자 다.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 라. 인천 내 활동실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
	[증빙제출 자료] 신청자 본인(단체 대표자)의 인천 연고 기준 택 1 ①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②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활동실적 증빙 자료(양식 별첨) : 2019~2020년에 3회 이상 인천 내 활동실적

연구결과물 제출	• 결과보고서 형태 : 자유형식의 보고서(파일 제출) • 제출기한 : 2021년 12월 31일

제출서류		
	공통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및 작성방법 참고)
		신청자격 증빙제출 자료(인천연고, 단체증빙, 활동증빙) 주민등록등·초본, 단체등록증, 활동실적증빙자료 등 ※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 해당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①	**연구계획서 1부** (자유양식)또는 [양식 4] 2-2 연구모임계획서 42P
	②	**연구책임자 소개서 및 경력사항 1부**
	③	**최근 3년간의 활동 포트폴리오 1부**
	④	**주요참여자의 개인소개 및 참여확인서 1부**

유의사항	▪ 인천문화예술연구지원의 경우 반드시 별도 추가 양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 4] 42P. • 지원신청 시 연구의 주제 의도 실행계획 등의 핵심 개념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지원신청서 위주로 작성하되 필요 시 별지 사용 가능합니다.) • 제출한 연구결과물이 표절 등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사업에 대한 주요사항 변경 시, 변경조치기준표에 따라 지원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8. 역량강화

지원목적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 역량과 예술성·전문성 강화

대상사업

- 문학, 시각, 공연(음악, 무용, 연극), 전통 등 단체 및 개인의 예술적 역량강화를 계획하는 전 장르
-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가능한 사업

지원분야	대상	대상사업
국내 연구 주요 행사 참가	개인	• 국내 문화예술 관련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참가 ※ 참가 확정된 경우 우선지원 • 국내 주요 문화예술행사 참가지원 - 국내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레지던스 등의 참가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단체	• 예술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 • 운영과 관련된 각종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제휴하여 시행하는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 해당 단체의 단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야 함.

지원규모	**개인** 최대 500만원, **단체** 최대 800만원

지원항목

지원분야	대상	대상사업
국내 주요 행사 참가	개인	• 참가비, 교통비, 체재비 등의 일부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단체	• 개최 비용 일부(강사초빙 비용, 대관료, 자료제작 등의 실비항목 해당)

신청자격		개인	단체
영역필수 자격기준			최근 3년(2018~2020년)내 3회 이상 창작활동 실적이 증명되는 문화예술 단체
공통 자격	자격 기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확인이 완료된 자	공고일 기준 인천 내 등록 단체

기준 (택1)	1	**[증빙제출 자료]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단, 확인서의 잔여 유효기간이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며 인적사항의 주소지가 인천이어야 함. - 증명 분야는 각 지원 분야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 인적사항의 주소지가 인천이 아닌 경우, 자격기준 2의 [증빙제출 자료] ①, ② 중 선택 증빙 가능	**[증빙제출 자료] 단체 등록증** - 전문예술법인, 비영리법인 등 - 단, 등록 소재지는 인천이어야 함
	자격 기준 2	신청자 본인(개인) 또는 단체 대표자가 아래의 인천 연고 기준 중 하나라도 부합하는 경우 가. 인천 출생 나. 인천 소재 학교 졸업/재학자 다.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 라. 인천 내 활동실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	
		[증빙제출 자료] 신청자 본인(단체 대표자)의 인천 연고 기준 택 1 ①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②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활동실적 증빙 자료(양식 별첨) : 2019~2020년에 3회 이상 인천 내 활동실적 ※ 개인의 경우, 신청자 본인 / 단체의 경우, 단체의 실적을 제출	

유의사항	• 개인의 단순 참관사업 등은 지양합니다. • 해당 사업에 대한 주요사항 변경 시, 변경조치기준표에 따라 지원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공통**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및 작성방법 참고)
		신청자격 증빙제출 자료(인천연고, 단체증빙, 활동증빙)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단체등록증, 활동실적증빙자료 등 스캔본
	개인	**해당 개인의 예술활동 실적 자료 등**
		해당 프로그램 참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 (해당 경우에 한함)
		참가 프로그램 및 행사와 관련된 자료 (팸플릿, 각종 안내자료 등)
	단체	**주요 참여자의 개인소개 및 참여확인서**
		초청강사 등의 개인소개 및 참여확인서

지원신청서 양식

인천문화재단홈페이지>열린문화>공지사항
2021년 예술표현활동지원신청 공고 내 첨부 서식

2021 인천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제출 확인

아래의 사항을 확인·숙지하신 후, 오른쪽 박스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의 목적과 신청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해 재단 관계자에게 청탁을 할 경우 지원사업 선정에서 제외되며, 향후 재단 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지원 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내용과 제출 서류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내 기재한 신청개요(사업명, 사업장소, 사업기간, 지원신청액)와 제출하는 신청서의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참여 인력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신청서 2P 안내.)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제 출 일 자	2021년 월 일
신 청 자 명	(날인/서명)

2021 인천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 신청개요

지원영역				
확인사항	지원 신청 영역에 해당하는 활동 경력과 신청자격을 확인하셨습니까? ☐			
	각 영역에 맞춘 증빙자료를 검토하셨습니까? ☐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			
신청개요	**사 업 명**			
	총사업비	**원**		
	지원신청금	**원**	**자체부담금**	**원**
	총사업기간	2021. mm. dd. ~ 2021. mm. dd.		
	실사업기간	2021. mm. dd. ~ 2021. mm. dd. (일/ 회)		
	사업장소	(석) ☐ 확정 ☐ 미확정		

신청주체	**개인**	이름		
		주소		
		연락처		
	단체	단체명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실무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공통자격(인천연고) 증빙제출 자료 확인	☐ 예술활동증명서 ☐ 단체등록증 ☐ 주민등록등·초본 ☐ 졸업/재학증명서 ☐ 활동실적증빙 ☐ 기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 ☐함 ☐안함	본 단체(개인)는 「인천문화재단 인천형예술인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목적>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평가 및 인천형예술인지원사업 관련 홍보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연락처, 학력 등 제출내용	<개인정보 이용방법> -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 업무에만 사용

2.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총사업기간				
실사업기간			사업장소	
사업소개	추진배경			
	필 요 성			
	기획의도			
사업세부계획 ※세부프로그램 진행과정				

사업추진일정					
※ 사업준비 및 홍보 등을 위한 추진일정을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업일정	추진내용				
홍보계획					
기대효과 및 사업성과	발표작품수	총 작품수 ( )	참여예술인수	한국( )명/외국( )명	
	공 연	횟수( ) / 기간( )일	관객수(예상)	한국( )명/외국( )명	
	전 시	횟수( ) / 기간( )일	주 요 관 객	유료( )명	
	발 간 물	부수( )부		무료( )명	

사업 참여자 명단

※ 연출자, 안무자, 전시기획자, 축제기획자 등의 주요 참여자는 [개인소개 및 참여확인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 단체전, 기획전 등은 전시기획자와 참여 작가를 모두 적어 주십시오.
※ 사업 관련 주요 참여자(제작진 및 출연진, 기획자 등)의 개인소개 및 참여확인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 인원이 많을 경우 주요 참여자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인원수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역 할	성별	연령	소속 및 직책	비고

3. 예산계획

총사업비	원	지원신청금	원	자체부담금	원

	예산항목	산출근거	예산구성		예산액
			지원신청(원)	자체부담(원)	
지출예산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합 계				

필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 약 서

본 사업에 신청하는 단체(본인)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 관리조치가 당해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사업 수행자 전원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 서약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공모선정 취소, 향후 인천문화재단 사업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체/개인명 :

(인)

대표자 성명 :

양식 1 2019~2020년 인천 내 활동 실적(공통 필수 자격기준 양식 ③)

1	작품명		참여역할	
	시기		장소	
	첨부파일/링크(URL)			
창작의도 및 주요내용				
예술적 성취내용	[작성 도움말 예시] (도움말은 삭제 후 작성해주세요) - 아래와 같은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세요. *• 관심있는 주제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 예술의 다양성 발견, 예술적 역량 강화, 네트워킹을 통한 예술계 이슈 공유 및 확산, 축제 참여와 같은 유통 성과, 새로운 예술적 가치에 대한 재발견, 동시대 사회현상을 통한 소재 확장, 예술가로서의 성장,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통한 활동영역 확장 등*			
2	작품명		참여역할	
	시기		장소	
	첨부파일/링크(URL)			
창작의도 및 주요내용				
예술적 성취내용	[작성 도움말 예시] (도움말은 삭제 후 작성해주세요) - 아래와 같은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세요. *• 관심있는 주제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 예술의 다양성 발견, 예술적 역량 강화, 네트워킹을 통한 예술계 이슈 공유 및 확산, 축제 참여확인서와 같은 유통 성과, 새로운 예술적 가치에 대한 재발견, 동시대 사회현상을 통한 소재 확장, 예술가로서의 성장,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통한 활동영역 확장 등*			
3	작품명		참여역할	
	시기		장소	
	첨부파일/링크(URL)			
창작의도 및 주요내용				
예술적 성취내용	[작성 도움말 예시] (도움말은 삭제 후 작성해주세요) - 아래와 같은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세요. *• 관심있는 주제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 예술의 다양성 발견, 예술적 역량 강화, 네트워킹을 통한 예술계 이슈 공유 및 확산, 축제 참여와 같은 유통 성과, 새로운 예술적 가치에 대한 재발견, 동시대 사회현상을 통한 소재 확장, 예술가로서의 성장,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통한 활동영역 확장 등*			

※ 최근 2년간의 활동실적 중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주요 활동을 3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하는 실적의 경우, 검토 가능한 관련 자료(첨부 파일명 혹은 url링크 기재)를 첨부 바랍니다.
※ 활동실적 작성 시, 위 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 시 별지를 첨부하셔도 됩니다.

양식 2 개인소개 및 참여확인서

본인은 아래의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해 개인 소개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인)	제출일자
사 업 명			
사업일정			
사업장소			
참여역할	☐ 작 가 ☐ 연 출 가 ☐ 안 무 가 ☐ 작 곡 가 ☐ 기획자(영역:) ☐ 공간운영자 ☐ 기타 ( )		
출생년도			활동지역
활동분야			
현재소속단체			
전화번호	( ) -		이동전화
주 소	(우 -)		
E-mail			홈페이지
주요사항	경 력		
	활동실적		
	수상내역		

※ 주요사항 작성 시, 위 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 시 별지를 첨부하셔도 됩니다.
※ 작가, 기획자 등의 소개서는 본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주요 참여자는 본 '개인소개 및 참여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출자·안무가·작곡가 등 주요 제작진과 주요 출연진, 전시기획자 등에 대해서는 본 개인소개 및 참여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전 및 기획전은 주요 참여 작가에 대하여 본 개인소개 및 참여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3 단체 소개서

개 요	단 체 명		대표자	
	등록번호	종류 ( ) ※ 해당 단체에 한함	설립연도	
	단체구분	■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상법인 □ 사설•임의단체 ■ 문예진흥법(제7조)에 의한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유형 :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 해당사항 없음 ■ 자격에 따른 단체번호 :		
	주 소	(우 -)		
	설립목적	■ ■		
	활동분야			
일반현황	단체 구성 인원	총( )명 = 임원 ( )명 + 직원•회원 ( )명 + 등록회원 ( )명		
	연간예산규모 (개략적 평균)	총( )천원 = 예술활동경비 ( )천원 + 운영경비 ( )천원		
	예산 조달	연간 예산 규모(100%) = 자체 조달 ( )% + 외부 조달 ( ) %		

회원명단 (※정규 회원에 한함)	연번	성 명	직책(역할)	주요활동내용

기금 운영 실적	연 도	기금운영 사업내용 (사업명)	기금지원기관

※ 활동실적 작성 시, 위 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 시 별지를 첨부하셔도 됩니다.
※ 기금 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4 연구모임 계획서(인천문화예술연구지원만 해당)

2-2. 연구모임 계획서

1. 연구모임 및 구성원 소개

■ 연구모임 소개

모임 이름			
모임 대표자		총 인원	명
목적 및 주요활동 개요	○ 결성 계기 또는 목적		
	○ 주요 활동		

■ 연구모임 명단 및 역할

1	성명		E-mail	
			전화번호	
	주소		모임 내 역할	
	현재 소속			
	분야 및 주요경력			
2	성명		E-mail	
			전화번호	
	주소		모임 내 역할	
	현재 소속			
	분야 및 주요경력			
3	성명		E-mail	
			전화번호	
	주소		모임 내 역할	
	현재 소속			
	분야 및 주요경력			
4	성명		E-mail	
			전화번호	

	주소		모임 내 역할	
	현재 소속			
	분야 및 주요경력			
5	성명		E-mail	
			전화번호	
	주소		모임 내 역할	
	현재 소속			
	분야 및 주요경력			

○ 연구모임은 최소 2인에서 최대 5인까지 구성(구성 인원수는 범위 내에서 자유설정 가능)
○ 모임 내 역할은 연구모임 운영을 위해 구성원의 필요한 역할 논의 후, 결정

2. 학습 및 운영계획

■ **연구 주제와 제안배경**

연구모임 운영기간	'21. . . ~ '21. . . (총 회 시간)
주 제	
주제 선정 이유	
주제 관련 연구 및 활동 경력	
향후 연구 및 프로젝트 진행계획	□ 연구(프로젝트)명 : □ 기간 : □ 장소 : □ 목적 : □ 상세내용 :

■ **연구계획 및 실행계획**(주제에 대한 연구모임 계획 및 연구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실행계획 및 실행방법	

■ **과정 공유 계획**(연구모임 특성을 고려한 과정공유 방법 제안)

연구모임 구성원들끼리의 연구 진행 상황 공유 계획 및 결과공유방안(SNS 활용방안, 온라인 모임 운영방안)

■ **실행 계획**

No	일 정	장소	교육형태
1	모임 활동 일시		토론, 강의 등 교육형태 명시
	학습주제		
2	모임 활동 일시		
	학습주제		
3	모임 활동 일시		
	학습주제		
4	모임 활동 일시		
	학습주제		
5	모임 활동 일시		
	학습주제		
6	모임 활동 일시		
	학습주제		

양식 5 **공간 소개서**(작은예술공간지원에만 해당)

공간현황	공 간 명			운영단체(대표자)	
	등록번호	※공간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공연장등록증 등		설립연도	
	공간소재지				
	소유여부	□ 소유 □ 전세 □월세 (소유자명 :)			
	임차조건 (전월세 시)	임차인		임차기간	
		보증금		월세	원 (부가세, 관리비 제외금액)
	면적	○ 전체 : ㎡ ○ 전시/공연 전용면적 : ㎡			
	공간소개				
	공간운영주체 (단체)소개 (설립연도, 주요이력 등)				

	구분	상세내용		수용가능인원
시설현황	전시실	□ 전체 ( ) 개 - 제1 전시실 (㎡ / 평) - 제2 전시실 (㎡ / 평) - 제3 전시실 (㎡ / 평)		
	공연장	무대	무대형식	□프로시니엄 □ 상자형 □ 돌출형 □ 원형 □ 기타( )
			무대크기	넓이(W) x 깊이(D) x 높이(H) :
		객석	객석수	( ) 석
			장애인석	□유 ( ) 석 □무
			객석형태	□장방형 □부채꼴 □2면 □3면 □가변형
	부대시설	세미나실	□유 : ( ) 개, (㎡) □무	
		교육공간	□유 : ( ) 개, (㎡) □무	
		기타	사용 용도 : 개수, (㎡)	
	사무공간	□ 유 (㎡ / 평) □ 무		
	관객편의시설	화장실	□남녀구분 □남녀공용 □무	
		로비	□유 □무	
		주차시설	□유 □무	
		기타시설	□매점, 카페 □자판기	

※수용가능인원은 사업성격(전시/공연/기타 행사 등)에 따라 자유롭게 기재
※위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추가기재 가능
※위 양식에서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 후 제출

	구분	프로그램(주요내용)	기간	관람객 (참여인원)	비고
최근 2년간 공간운영실적					
공간 내외부 사진첨부					

지원신청 관련 작성방법 안내

지원신청서 양식 작성방법 안내

Ⅰ 지원신청서

1. 신청개요

연번	구분	참고사항
1	지원영역	-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사업명 기재 (예) 예술표현활동지원 - 연극
2	사업명	-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내 기재사항과 동일해야 함 **(출판의 경우 책제목)**
3	총사업비	- 사업에 소요되는 전체금액을 '원'단위로 기재
4	지원신청금	- 인천문화재단에 지원 신청하는 금액을 '원'단위로 기재 - 지원분야별 지원신청금액 범위를 참고하여 작성
5	사업기간	- 총사업기간 : 사업 준비 기간부터 사업 종료 후 최대 3개월까지의 기간 ※ 단, 2022.01.31.을 넘을 수 없음 - 실사업기간 : **리허설 및 사업 준비 기간을 포함한 실제 발표기간** **공연 및 전시의 일정, 출판 사업의 경우에는 출간예정일을 기재** **예) 2021년 8월 10일 출간 예정 : '2021.8.10. ~ 2021. 8.10'로 기재**
6	사업장소	- 사업이 수행되는 구체적인 장소 기재 (출판의 경우 출판사 이름) - 여러 지역을 순회하거나 수차례 개최되어 장소가 2곳 이상일 경우에는 작성공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재하거나 '○○○(대표적 장소)등 ○개처'로 기재 - 장소 확정여부 ∨표시(장소 확정 시 대관확인서, 대관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7	신청주체	신청인의 유형을 개인, 단체로 구분하여 작성 • 개인 : 성명과 연락처 기재 • 단체 : 단체명(약칭, 별칭 등은 안 됨), 대표자와 실무자의 성명과 연락처 기재 • 신청서에 작성된 연락처(주소, 핸드폰 및 이메일 등)로 지원심의결과 통보 예정 • 단체일 경우 단체 직인 및 대표자 도장, 개인일 경우 본인 도장 날인

2. 사업계획서

<table>
<tr><th>연번</th><th>구분</th><th>참고사항</th></tr>
<tr><td>1</td><td>사업명</td><td>-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내 기재사항과 동일해야 함 (출판의 경우 책제목)</td></tr>
<tr><td>2</td><td>사업기간</td><td>- 총사업기간 : 사업 준비 기간부터 사업 종료 후 최대 3개월까지의 기간
※ 단, 2022.01.31.을 넘을 수 없음
- 실사업기간 : 리허설 및 사업 준비 기간을 포함한 실제 발표기간
공연 및 전시의 일정, 출판 사업의 경우에는 출간예정일을 기재
예) 2021년 8월 10일 출간 예정 : ‘2021.8.10. ~ 2021. 8.10’로 기재</td></tr>
<tr><td>3</td><td>사업장소</td><td>- 사업이 수행되는 구체적인 장소 기재 (출판의 경우 출판사 이름)
- 여러 지역을 순회하거나 수차례 개최되어 장소가 2곳 이상일 경우에는 작성공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재하거나 ‘○○○(대표적 장소)등 ○개처’로 기재</td></tr>
<tr><td>4</td><td>사업소개</td><td>- 추진배경, 필요성, 기획의도 작성</td></tr>
<tr><td>5</td><td>사업세부계획</td><td>- 아래 ‘사업내용 작성 참고표’의 사업내용 항목 중심으로 작성하고, 양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가능(주요 사항이 누락될 경우에는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내용 작성 참고표 】
<table><tr><th>사업 구분</th><th>사업내용 항목</th></tr><tr><td>출판 사업</td><td>• 책자명, 수록내용, 규격, 면수, 출판사, 발간예정일, 발간주기, 발간부수, 판매·보급 등 활용계획, 홍보계획</td></tr><tr><td>공연 형태</td><td>• 공연작품명, 공연기획의도, 초연·재연 여부, 공연회수, 정기(정례) 공연의 경우 차수, 공연소요시간, 공연주제, 공연내용(줄거리), 주요 제작진 및 출연진 명단(성명·연령·주요경력·현직 등), 홍보계획, 관람료 유무 여부 등
• 이미 공연된 적이 있는 우수 작품의 재연을 신청하는 경우, 이전 공연 실적
(작품명·기간·장소·참여자·관객수·언론보도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 내용, 재공연 이유와 재공연시 보완사항 등) 첨부</td></tr><tr><td>전시 형태</td><td>• 전시명, 전시 기획의도 및 주제, 전시 기획자 및 참여 작가 명단(성명·연령·주요 경력 및 현직 등), 전시작품 종류 및 수량, 전시내용 및 해설, 전시구성 및 연출방안, 홍보계획, 관람료 유/무, 전시기획자(큐레이터) 경력사항</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6</td><td>기대효과 및 사업성과</td><td>- 예상되는 계량적인 사업성과를 수치로 기재</td></tr>
<tr><td>7</td><td>사업추진 일정</td><td>- 사업준비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사업진행 항목과 추진일정 기재
(준비 및 연습기간 포함)</td></tr>
<tr><td>8</td><td>사업참여자 명단</td><td>- 주요 사업 참여자 명단 기재(출판, 전통/시각 개인전 등은 예외)
- 기획자, 연출자, 출연진, 작가 등 주요 사업 참여자를 확정된 사항으로 기재하고 개인소개 및 참여확인서를 첨부 (지원 선정 후 주요사업 참여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조치기준표에 의거하여 지원금이 삭감되거나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td></tr>
</table>

3. 예산계획

- 사업에 소요되는 지원신청금액 작성(필수사항)
- 아래 <사업예산참고표>를 참고해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항목과 동일하게 작성
- 사업비 산출근거는 사전조사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함. 근거 없이 사업비를 과다 책정할 경우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자체부담금(선택) 시 100% 정산해야 함
- 자체부담금은 인천문화재단에 지원 신청하는 금액 외에 타 공공재원, 기타 후원 및 협찬금, 사업수입, 자체자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지원신청 시’ 총사업비와 지원 선정 후 ‘교부신청 시’ 총사업비에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차년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단체 대표자에게 지원금으로 사례비(기획료, 연출료 등)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금 규모의 10% 이내(최대 200만원 이하)에 한함
- 지원금은 지정된 항목에만 사용해야 하며, 결과보고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자산취득성 항목은 10만원 이하로 지출 가능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용기한을 연내로 설정해야 지출 가능)
- 예술인고용보험제도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액 또한 지원금 항목 내에서 편성(일반수용비>원천세)하여 집행해야 함

【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

<table>
<tr><th>구분</th><th>항목</th><th>적용 내용</th></tr>
<tr><td rowspan="3">집행 가능</td><td>일반수용비>사례비</td><td>작곡료, 편곡료, 작사료, 부지휘료, 연습피아니스트료, 조율비, 연출료, 감수료, 안무료, 무대감독료, 음향감독료, 조명감독료, 무대미술, 의상비, 연출 등 조수료, 메이크업, 대본료, 번역 가사료, 작품사용(저작권)료, 지휘료, 연주료, 솔리스트료, 합창료, 출연료, 기획자 및 진행 요원 임금 등 모든 인건비성 사례비
※ 보수-인건비 및 용역비는 책정 불가능</td></tr>
<tr><td>일반수용비>홍보 및 마케팅</td><td>일체의 홍보물 제작에 관련된 비용</td></tr>
<tr><td>일반수용비>제작비</td><td>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를 제작하는 데 수반되</td></tr>
</table>

		는 모든 비용
	일반수용비>재료비	미술, 사진, 혹은 여타의 장르에서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일반수용비>수선비	수선비는 기존의 콘텐츠를 수리 혹은 개선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일반수용비>발간비	**- 작품집, 악보집, 도록 등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 - 단, 비용의 규모가 크지 않은 리플렛, 포스터 등의 제작은 일반수용비>홍보 및 마케팅으로 설정 - 도록 역시 규모가 작다면 일반수용비>홍보 및 마케팅으로 설정해도 무방
	일반수용비>기타운영비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타 비용(예산항목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때 설정) 연구 리서치, 워크숍 등을 위한 도서구입비 등 창작준비과정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 가능
	공공요금 및 제세>공공요금및세금	부가세, 우편료 등
	임차료>대관료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의 사용, 혹은 그에 딸린 부대시설을 대관(부대 설비비 포함)할 때 드는 비용
	임차료>임차료	모니터, 컴퓨터, 노트북, 빔프로젝터, 음향장비, 악기, 영상장비 등 일체의 장비나 소품을 대여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 설정 (보험료 포함)
	국내여비>[국내]교통 및 체제비	국내 항공, 숙박, 운송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국외여비>[국외]교통 및 체제비	해외 항공, 숙박, 운송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사업추진비>사업추진비	간담회, 심포지움,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등의 행사를 진행할 때 소요되는 간식비, 식사비
	일반수용비>원천세	원천세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 고용보험료 등) 일반수용비>사례비를 지출할 때 제외된 원천세 비용
	일반수용비>수수료	은행 송금수수료

【 지원금 사용 불가 항목 】

구분	항목	적용 내용
집행 불가	일반수용비>용역비	기획사, 대행사 등 외부업체에 발주를 하고 지급하는 비용
	보수>인건비	반복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월급) 형태의 비용 ※ 인건비(인건비성 사례비)는 일반수용비>사례비로 집행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	
	기타직보수>기타직보수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일용임금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운영비>기타운영비	공공요금, 통신요금, 일반적 운영을 위한 경상운영비 등은 집행불가
	특근매식비>특근매식비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시에 식사비로 설정하는 내용
	>일반연구비	
	>정적연구비	

Ⅱ 개인소개 및 참여확인서

▣ 출　　판 : 창작집 등 단행본을 발간하고자 하는 작가 본인의 소개 및 참여확인서
▣ 시각예술 : 개인전을 개최하고자 하는 작가 본인의 소개 및 참여확인서
▣ 공연형태 : 주요 제작진(연출가 안무가 작곡가 등) 및 주요 출연진의 개인소개 및 참여확인서
▣ 전시형태 : 전시기획자의 개인소개 및 참여확인서
▣ 축제형태 : 축제기획자의 개인소개 및 참여확인서

Ⅲ 단체소개서

▣ **해당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의 연혁 및 활동실적 소개서**

- 단체소개서는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양식이므로 설립연도와 단체구성, 인원수(임원, 회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회원이나 예술단원의 명단은 별도 첨부 가능

※ 사업수행시에 사업일수/회수, 사업장소, 총사업비 등이 변경조치기준표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행 가능한 사업규모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아래 변경조치기준표 참조)

【 변경조치기준표 】

변경내역		변경정도	조치사항	비 고
사업주체	**사업주최자**	사업주최자의 실질적 변경	지원금 취소	
사업일정	**사업일수**	총 사업일수 및 사업 횟수가 50%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지원금 취소	
사업규모	**사업규모**	사업규모가 50%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전시작품수, 참여 작가 수, 프로그램 수 등)	지원금 취소	
사업일시	**개최시기**	사업개최일시(시작일시)가 지원신청시보다 2개월 이상 미루어지는 경우	사안에 따라 승인 결정	
사업장소	**사업장소**	사업장소의 규모가 50%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지원금 취소	
사업예산	**총사업비**	총 사업비가 지원신청시의 60%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단, 지원신청당시의 금액과 최종선정금액이 큰 폭으로 조정되었을 경우 예산 비율에 따라 총사업비 편성 가능)	지원금 취소	자부담이 60% 이상인 경우 제외
사업내용	**주요 사업 참여자**	주요 출연진 또는 사업(창작) 책임자의 변경 출연진·제작진 50% 이상 변경 및 축소 연출가 변경(연극 분야) 안무가 변경(무용 분야) 전시기획자 변경(전시 형태 사업) 주요 사업기획자 변경(각종 기획사업)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	
	사업형태	타 행사의 일부로 귀속되는 등의 변경	지원금 취소	
	작 품	작품 및 작가 변경	지원금 취소	
	결과물	크기 및 수량이 50% 이상 축소되는 경우 (책자 발간 부수 등)	지원금 취소	
	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 50% 이상 변경(음악/국악)	지원금 삭감	
		창작초연이 재연작품으로 50% 이상 변경	지원금 삭감	
사업수행	**사업포기**	단체 귀책사유로 인한 공연포기	익년도 행정심의에 반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원사업 심의에 반영	

※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른 정부방역지침 상황에 따라 기준표는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에 따른 사업 포기, 취소 시 불이익 조치 없음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에 따른 참여자, 프로그램 일부 등 변경 시 불이익 조치 없음

【 원천징수 제도 】

● 상대방에게 소득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

분류	세율	비고
사업소득	**3.3%(주민세 포함)**	지급액수와 상관없이 납부
기타소득	**8.8%(주민세 포함)**	125,000원 초과 시 납부 125,000원 미만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사업소득-소득자가 해당 용역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ex. 무용수가 무용수로 참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소득자가 해당 용역을 비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ex. 무용수가 강의자로 참여하는 경우)

<예시>
출연료가 300,000원인 경우 원천징수 금액 계산
- 사업소득인 경우

출연료 총금액	원천징수 납부금액			출연자 실지급액
	사업소득세(3%)	지방소득세(0.3%)	계	
300,000	9,000	900	9,900	290,100

- 기타소득인 경우

출연료 총금액	원천징수 납부금액			출연자 실지급액
	사업소득세(8%)	지방소득세(0.8%)	계	
300,000	24,000	2,400	26,400	273,600

⇒ **출연자에게 세금총액을 제외한 실지급액을 지급**
⇒ 원천징수금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신고

【 원천세 신고 및 납부방법 】

● 사업장 소재지별 관할 세무서 (국번 없이 126)

세무서명	연락처	관할구역
남인천 세무서	032-460-5200	남동구, 연수구
북인천 세무서	032-540-6200	부평구, 계양구

세무서명	연락처	관할구역
서인천 세무서	032-560-5200	서구
인천 세무서	032-770-0200	동구, 중구, 남구, 옹진군

● **직접 방문시**

1. 관할 구역 세무서 소득세과 방문
2.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3.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 납세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 방문하여 납부.
4. 해당 원천세액 납부 영수증은 정산보고서 및 성과보고서 제출
5.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의 경우, 신고 시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여 수령.

*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사례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월별납부)까지 완료해야 함.

*** 인터넷으로는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와 위택스에 문의 (문의 전화 번호 : 홈택스 126, 위택스 110)**

【 대표자/신청자 본인 사례비 지급 】

● 단체 대표자(기획자) 또는 개인 본인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행 가능 범위 : 지원금 예산의 최대 10% 범위 이내로 최대 200만원 이하 집행 가능
● 본인 사례비는 차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납부 제외)
● 관련 세부 사항은 교부신청 과정에서 안내드립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

●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 직업인의 생활 및 고용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보험으로 2020.12.10.부터 시행되었으며, 예술인의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적용 대상	피보험자격 구분	적용 제외
- 근로자가 아니면서,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 본인이 직접 노무를 수행하는 65세 이하 예술인	**일반예술인** 특정 사업주와 1개월(20일 이상)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계약상 소득 금액)
	단기 예술인 단기간(1개월 미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공연 영상 제작 등 단기간 참여 예술인	

※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예술인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계약 총일수)×30

예시
예술인 홍길동이 사업주 00예술단체와 2021.3.1.~4.30.(2개월), 200만원 계약
≫ 월평균소득 : (2,000,000원÷61일)×30일 = 983,606원
≫ 1개월 이상 계약,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인 '일반 예술인'으로 당연가입 대상임

예술인 김산들이 사업주 ㅁㅁ발레단과 2021.3.1.~4.30.(2개월), 100만원 계약
≫ 월평균소득 : (1,000,000원÷61일)×30일 = 491,803원
≫ 1개월 이상 계약으로 '일반 예술인'이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으로 당연가입 제외대상임

● 피보험자격별 관리 및 보험료 부과/산정

피보험자격	신고	월보험료 산정	고지납부
일반 예술인	처음 노무를 제공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한번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월평균보수(총 소득-20%)×1.6%	국민건강보험공단
단기 예술인	노무를 제공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일보수의 월 합계액-20%)×1.6%	

- 보험료율 : 실업급여요율 1.6%를 예술인과 사업주가 50%씩 균등 부담 (사업주 원천공제)
- 일반예술인 부과기준 보수 : 총 소득(총수입금액) - 20% 공제
  ※ 단 부과기준 월 평균보수가 80만원 미만시에는 기준보수를 80만원으로 함
- 납부 : 매월 10일(다음달)
  ※ 취득일 : 노무제공 개시일 / 상실일 : 노무제공 종료일의 다음 날

※ 관련 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고용보험(단기예술인) 노무제공 내역 확인신고서

예 시	예술인 홍길동이 사업주 00예술단체와 2021.3.1.~7.31.(5개월), 1,000만원 계약 ≫ 1개월 이상 계약,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인 '일반 예술인'으로 당연가입 대상임 ≫ 보험료 산정 부과기준 보수 : 10,000,000원 - 2,000,000원(20%) = 8,000,000원 ≫ 월평균보수 : 8,000,000원÷5개월 = 1,600,000원 ≫ 월 보험료 : 1,600,000원×1.6% = 25,600원(사업주와 예술인이 각 50% 12,800원 부담) 사업주 00예술단체가 예술인 홍길동과 2021.3.1.~7.31.(5개월) 300만원 계약시 ≫ 1개월 이상 계약,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인 '일반 예술인'으로 당연가입 대상임 ≫ 보험료 산정 부과기준 보수 : 3,000,000원 - 600,000원(20%) = 2,400,000원 ≫ 월평균보수 : 2,400,000원÷5개월 = 480,000원 (기존보수 80만원 적용) ≫ 월 보험료 : 800,000원×1.6% = 12,800원(사업주와 예술인 각 50% 6,400원 부담) 1일 10만원, 5일 10만원, 10일 15만원 3일간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 예술인 홍길동의 경우 ≫ 1개월 미만 단기 예술인으로 월평균보수는 산정하지 않음 ≫ 매일 지급하는 보수 합계액에서 20% 공제 후 1.6%를 보험료로 납부 ≫ (100,000원+100,000원+150,000원)-70,000원(20%)=360,000원 신고

【 신고 및 납부방법 】

● 관련 기관 안내

구분	주요업무	연락처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전담부서	02-2097-9250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1577-1000
국민연금공단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등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서식 접수	063-711-7800

● 신고 및 납부 관련 서식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에서 작성 제출 가능합니다.

【 집행 증빙서류에 따른 유의사항 】

-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에는 구체적인 단가 산출 또는 원가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 **인터넷뱅킹 입금확인증 제출가능(단, 받는 사람 이름, 계좌번호, 입금액, 입금일시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온라인 가상계좌 거래 시, 제출자료 사전 확인하여 진행 (카드거래명세서, 입금확인증 등)**
- 계산서는 면세사업자나 '부가가치세법 1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만 발급 가능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자 유형 확인 필요.)
- **수기(세금)계산서는 증빙자료로 부적합.**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 18조(보조금 사용방법) 】

① 보조금 사용 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치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② 보조금 지출 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 1항과 제 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사항이 미비한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는다.**

【 사업자 유형별 지출증빙서류 수취 가능 여부 】

구분	고유번호증	일반과세자 겸영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X	○	X	제도없음
전자계산서	X	○	○	
신용카드매출전표	가맹 시 가능	○	○	

【 수익금 발생 및 집행내역 제출 】

- 지원사업 수행으로 발행한 수익금은 보조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익금은 전액 반납을 원칙으로 함. (단, 수익금을 해당 지원사업에 재투여한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아도 됨.)
-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익금 발생 내역 및 발생한 수익금 내역을 사업에 재투자하여 집행한 내역을 작성하여 정산보고 시 제출.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리규정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 운영관리규칙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리규정

제정 2007. 10. 12. 규정 제40호
개정 2012. 03. 30. 규정 제7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재원으로 하는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지원사업"이라 함은 인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활동 또는 문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이 수행하는 고유목적 사업을 말한다.
2. "지원금"이라 함은 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해 재단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예술 활동 또는 문화 사업을 말한다.
4.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인천문화재단 정관」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
2.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신청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지원사업기간
6. 기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교부 결정) ① 대표이사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대표이사가 위촉하며, 심의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다.

1. 법령과 규정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해당 문화예술지원사업 취지 부합 여부
3. 예산편성의 적정 여부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지원금의 교부대상, 교부금액, 교부조건 등을 결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조건) ①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지원금 교부 목적 및 문화예술지원사업의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지원금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지원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금은 교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공지) 대표이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 그 결정내용과 조건을 지원 사업 신청자에게 공지해야 한다.<개정 2012. 03. 30.>

제9조(지원금의 교부) 지원금의 지급은 지원사업자의 교부신청에 의하며,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 대표이사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에 의해 교부결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법령 및 규정,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변경하거나 포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 03. 30.>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의 실적보고) ① 지원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03. 30.>

② 실적보고 방법 및 보고기한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사업 정산검사) ①대표이사는 제13조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지원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정산검사를 한다. 다만, 정산검사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대표이사는 지원사업 기간 중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대표이사는 300만 원 이하 지원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산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지원사업자는 정산결과 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대표이사는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원사업자는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사업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5. 지원사업의 교부내용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6. 이 규정에 의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산, 평가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16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이 시행됨과 동시에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육성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및「인천문화재단 후원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12. 0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 운영관리규칙

제정 2019 .12. 규칙 제16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이하 "문체부 지침"이라 한다),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 및 정산 등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금"이란 재단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재단이 교부하는 지원금 중에서「보조금법」제2조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재단에서 지원금을 교부하고 문화예술지원사업 및 지원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지원관리시스템(이하'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등 온라인으로 구축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말한다.
5. "부정수급"이란「보조금법」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 경우를 말한다.
6. '보조사업비 카드'란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 전용카드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지원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지원사업자, 지원금수령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정수급 실태점검
2. 지원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3. 지원사업자 관리감독 및 지원사업의 집행점검
4. 그 밖에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원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③ 지원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대표이사가 정한 지원신청서와 교부신청서를 기일 내에 작성하여 제출
2. 지원사업 수행상황을 주관부서에게 보고
3. 사업 완료시 지원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④ 지원금수령자는「보조금법」및「보조금법 시행령」, 대표이사의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조건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지원금을 수령하여 지원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 편성) ① 지원사업의 유형별 예산액과 기타 사업비 등 세부집행계획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한다.

② 재단은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의 교부는 지원사업 소요경비의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책상 필요한 전액 지원사업 등 대표이사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1. 모든 항목은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
2. 지원금 교부액의 산출근거는 재단의 예산편성 기준에 준하며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산출근거를 명시.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한 용도나 산출근거로 편성 금지
3. 출장여비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단가를 초과하여 편성·지급 금지

⑤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단, 정책상 필요한 전액 지원사업 등 대표이사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2. 단체 대표자의 급여성 인건비 및 당해 지원사업 수행과 무관한 직원의 급여성 인건비 및 단체 운영경비
3. 당해 지원사업 수행과 무관한 단순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4.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⑥ 지원사업자는 제5항 제1호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에 의해 취득한 자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할 수 없다.

제5조(지원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지원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통지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재단 규정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사업자 선정기준) ① 대표이사가 지원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동일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이후의 지원사업 결정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재단 규정 제15조 각 호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재 조치를 받은 지원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제7조(지원사업자 공모) ①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원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보조금법」제1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단 규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의하지 아니한다.

② 공모방식을 통해 지원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대표이사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신청 안내 및 사업자 공모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 대상사업
3. 지원신청 자격 또는 대상자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심의평가의 기준
7. 그 밖에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중복수급 확인·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원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지원사업자 선정시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지원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사후에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원심의위원회) ① 공모방식으로 지원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원심의의 운영은 재단의「문화예술지원사업 관리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대표이사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지원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원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업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3. 그 밖에 대표이사가 승인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원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금이 취소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부받은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제32조에 의한 이의 신청 시에는 최종 결과 통보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반납한다.

제11조(지원사업의 포기 등)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조건에 비추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재단이 정한 방식에 따라 주관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수행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가 제1항에 의한 사업포기를 지원금 교부 후 또는 지원사업자 선정이나 지원심의 결과의 발표일로부터 30일 후에 한 경우에는 동일 사업유형에 관하여 다음 해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대표이사가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지원금 교부 후 지원사업 포기 시에는 포기신고를 제출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교부받은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 교부 조건) ① 대표이사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지원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임을 재단의 로고와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1. 재단 로고 : '재단 누리집-재단 소개-CI소개 - CI내려받기'에서 용도에 적합한 CI를 내려받아 홍보물과 인쇄물에 사용
2. 행사 현수막, 홍보물 등 : "후원 : 인천문화재단"의 문구 명시
3. 서적, 음반 등 인쇄물 : "이 책·음반은 인천문화재단의 0000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또는 사업명)으로 지원받아 발간·제작되었습니다"의 문구 명시
4. 기타 지원사업 수행 관련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 제작시 유의사항은 재단의 지침에 따른다.

③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하여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④ 재단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성과측정과 평가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지원사업자는 재단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원사업 중에서 대표이사가 문화예술사적으로나 문화예술지원 정책 차원에서 보존가치가 높다고 지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는 별도로 예술활동 결과물 자료 각 2부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 교부방법) ① 지원금은 지원사업자의 교부신청에 의해 사업시기에 맞춰 사업개시 3개월 전(국제교류 등 특정사업의 경우 최대 6개월 전)부터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교부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지원금 교부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을 전액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금 결정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을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최종 교부할 때에는 그 때까지 교부된 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③ 대표이사는 지원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지원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자부담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또는 선행조건의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원금의 연례적 이월 및 지원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지원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지원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지원금 또는 대표이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지원사업의 내용 변경 등)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자 선정 이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그 내역과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 보조비목 내에서의 보조세목 간의 전용은 예외로 한다.

② 지원사업의 변경 계획이 지원 신청 및 심의 당시의 지원목적과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승인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가 사업내용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이나 사유에 따라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 내용 변경으로 사업의 규모가 지원 신청 및 심의 당시의 규모에 비해 현저히 축소될 경우 대표이사는 지원심의에서 적용한 보조금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당초 결정하였던 지원금액을 축소.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변경된 금액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 추진 도중 단체 대표자 변경 발생시 신속히 서면으로 대표자변경 신청 후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 담당자 등의 변경이 있을 시에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지원사업의 인계 등) ①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으로 위탁하여 수행할 수 없다.

② 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원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그 내역과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원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원사업자는 주관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지원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해당 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통장을 사업 종료 후 5년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지원사업자는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강사료, 원고료, 인건비 등의 각종 수당 및 사례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사업의 수행 요구) ① 대표이사는 지원사업자가 법령,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조건 또는 법령이나 이 규칙에 따른 대표이사의 처분에 따라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원사업자에게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지원사업자가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원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조(지원금 사용방법) ① 지원금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직접 경비 지원이 원칙이며, 지원금 지원이 불가하는 항목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지원금 사용방식은 지원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원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③ 지원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금액을 사전에 단체대표, 담당자 등이 먼저 집행한 후 그 금액만큼을 해당자에게 계좌이체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경우 현금지출 사유와 함께 집행내역 및 영수증을 해당금액 이체영수증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관부서에서 현금사용 집행내용을 검토한 후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집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지원금은 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사전 집행은 금지한다.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는 사후에 지원금으로 대체하여 보전할 수 없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전 집행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지원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2의 업종에는 지원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사업자는 별표 2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지원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별도 계정 등)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교부신청시 지원사업별 계좌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별로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단체(지원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2개 이상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대표이사는 지원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원사업의 수익금으로 자기부담분을 충당하거나 지원사업의 수행 중에 자기부담금을 확보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지원사업자 선정 또는 지원금 교부 과정에서 승인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자 또는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제22조(수익금 관리 기준) 지원사업의 수행 기간 중 발생된 수익금은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지원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사업비의 이월)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지원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① 대표이사는 지원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 및 재단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및 집행잔액과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 받아야 한다. 지원사업자는 집행잔액과 결산이자를 별도로 구분해서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 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제1항의 대표이사가 정하는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는 등 주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안내」로 정한다.

③ 지원사업자는 국제교류사업의 경우 실적보고 제출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 집행과 관련한 해당인의 항공권사본과 여권사본(사진이 있는 면과 해당하는 출입국도장이 찍힌 면) 또는 항공권 사본과 출입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한 경우 동 사업을 위해 출국한 인원 전체 제출
2. 해외인사를 초청한 경우 초청인사의 서류

④ 지원사업자는 실적보고서상의 계량적, 비계량적 실적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의 평가 결과는 지원사업자의 평가점수로 누적되어 향후 지원심의에 반영될 수 있다.

⑤ 지원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대표이사는 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대표이사는 제24조의 지원사업 실적보고서를 재단 관련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지원사업자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지원사업자에게는 지원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대표이사는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원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90일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지원금 삭감
2. 180일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지원금 삭감
3. 360일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지원금 삭감

제26조(정산보고서의 검증) 지원사업자는 사업운영 관리에 필요하여 대표이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자료보관) ① 지원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료 또는 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는 「보조금법」 제26조 5항을 따른다.

제28조(지원사업 집행점검) ① 대표이사는 「보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

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지원금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세부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자를 선정한 지원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원사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표이사가 지원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표이사는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지원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지원사업점검평가단) 대표이사는 제28조의 지원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지원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점검평가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30조(지원금의 취소) ①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 내용이나 조건 또는 법령이나 이 규칙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지원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31조(지원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① 지원사업자 또는 지원금수령자가「보조금법」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지원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지원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지원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지원사업 수행제한 또는 지원금 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지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송달시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해당자의 주소, 거소 등이 모두 분명하지 않아 해당 결정을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公示)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결정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원사업자는 제32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2조(이의신청)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지원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지원사업의 수행 배제, 지원금의 수급 제한, 그 밖에 지원금의 교부에 관한 대표이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대표이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가 제1항의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대표이사에게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3항의 규칙에 대해서는 본 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진행된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1] 지원금 지원 불가 항목

세 목	내 용
자본적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 설비 등
단체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식대 등 행사 부대경비	사업준비 또는 진행비 성격의 회의비(식비), 간담회비, 다과비 등의 식대 경비 및 행사 기념품 구입비 단, 외부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등 사업 성격상 필요할 경우 최소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 (재단과 사전협의)
여비(준비비)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등(단, 재단이 사전 승인한 경우 제외)
업무추진비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	상금, 상금 심사비 등
기타 사항	행사 기념품 구입,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금융 관련	**OTP, 공인인증서, 카드연체수수료는 지원금에서 집행할 수 없음**

[별표 2]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2021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 공모 일정 안내 】

● **시민문화 영역**

번호	사업명	사업내용/지원내용	지원금(최대금액)	공고시기
1	생활문화동아리지원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및 모임공간, 홍보비, 대관비, 진행비 등 지원	홍보비, 대관비 200만원 / 진행비 20만원 ※모임공간지원은 추후 공지	2021년 3월 이후 예정
2	우주인프로젝트	인천에서 실행 가능한 생활문화 프로젝트비 지원	300만원	
3	동네방네아지트	공간 기반의 생활문화활동 지원	250만원	

● **문화예술교육 영역**

번호	사업명	사업내용/지원내용	지원금(최대금액)	공고시기
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운영 지원 강사비 및 운영비	1개 기관·단체 최대 3,000만원	2021년 1월말~2월 초 예정
2	인천 지역문화예술교육 기획 지원	문화예술교육을 하고자 하는 단체 지원	1개 단체 최대 3,500만원	2021년 2월 예정
3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유아 문화예술교육 개발·운영 지원(문화시설 연계) 인건비 및 운영비	1개 문화시설별 최대 5,000만원	2021년 1월말~2월 초 예정
4	문화예술교육사 지원	문화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개 문화시설별 최대 4,000만원	2021년 2월 예정

【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이용 안내 】

|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이 협력하여 조성한 예술창작 공간입니다. 70년대 고지대의 급수를 위해 설립되었지만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옛 상수도 가압펌프장을 새롭게 개조한 이곳은, 공연예술단체에게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하고 예술인 네트워크 장으로서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생활에 가장 중요한 식수공급에서 예술의 꽃에 물을 주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은, 지역 공연예술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장소를 제공하고 '창작- 연습- 공연'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통해 공연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합니다.

| 대관 공간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은 총 2개 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대연습실 1개소(약 50평), 중연습실 1개소(약 28평), 리딩룸 1개소(약 7평)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간 운영 및 대관료

○ 운영시간 : 월~ 토요일 10:00 ~ 22:00

○ 휴 관 일 : 일요일, 법정 공휴일, 기타 인천문화재단이 지정하는 날

구분	오전 10:00-13:00	오후 14:00-17:00	저녁 18:00-22:00	전일사용요금
대연습실	20,000원	20,000원	20,000원	40,000원
중연습실	1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리 딩 룸	무료 사용			

※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1.5단계 이상)에 따라 10인이내 거리두기가 가능한 대연습실만 대관 가능

| 대관공간 구성

구분	위치	면적	구비시설
대 연 습 실	B동	172.0㎡	피아노, 보면대, 접이식의자, 댄스바, 덧마루, 유·무선 마이크 등
중 연 습 실	A동	80.6㎡	피아노, 유선 마이크, 보면대, 댄스바 등
다목적실(리딩룸)		88.2㎡ (23.1㎡)	유선 마이크, 빔프로젝터. 스크린, 테이블, 의자 등

| 대관 안내

○ **정기대관**

- 상·중·하반기로 나뉘며 분기별 대관 신청 및 심의 진행
- 상반기: 1~4월 / 중반기: 5~8월 / 하반기: 9~12월

○ **수시대관**

- 정기대관의 잔여일수 대관 신청 가능
- 신청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일정만 예약 가능

○ **대관 절차**

arko.or.kr 접속 → **대관 신청** → **대관 심의** → **대관 승인** → **대관료 납부** → **대관 확정**

○ **대관 신청 자격 제한**

- 강습목적의 대관
- 연습공간을 단체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참가자 통제가 불가능한 행사 (예: 공연, 오디션 등)
-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타 대관자의 이용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경우
- 대관신청 주체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지닌 경우
- 기타 재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Ⅰ 2021년도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접수 재연장 안내

□ 운영 개요

○ 대관기간 : 2021. 1. 12. ~ 4. 30.

※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은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됩니다.
대관이 확정된 후 방역지침 단계에 따른 휴관 조치가 이뤄질 경우 승인된 대관 건이라도 자동 취소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운영시간 : 10:00 ~ 22:00

○ 휴 관 일 : 일요일, 법정공휴일, 기타 인천문화재단이 지정하는 날

□ 신청 안내

○ 공고기간 : 2020. 12. 14.(월) 부터

○ 접수기간 : 2020. 12. 14.(월) ~ 2020. 12. 31. (목)

□ 신청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대관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예약 (http://arko.or.kr/pspace)

- 온라인 예약 시 정기대관 심의신청서 파일 미첨부시, 심의 포기로 간주함

- 예약신청 문의 : 032-868-9162~3

□ 신청절차

정기대관 연장공고	신청서 작성	대관 심의	시스템 승인	대관료 입금	대관 확정
12/14 ~ 12/31	12/14 ~ 12/31	1/4~1/8	1/8~1/11	1/8~/11	2021/1/11

□ 정기대관 심의 일정

○ 정기대관 심의 : 2020. 1. 4. ~ 2021. 1. 8.

○ **심의결과 발표 : 2021. 1. 8. 예정**

○ 결과안내 방법 : 선정단체(인)에 한하여 개별 연락

** 심의 일정 및 심의 결과 발표는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관 공간 안내

대상 공간	사용기준 인원	크기	면적	시설물
대 연습실	**10인 이하**	가로/세로 : 8.0m / 21.5m 높이 : 4.0m	172.0㎡	업라이트 피아노, 덧마루, 보면대, 유 · 무선MIC, MIC스탠드, 앰프 등
중 연습실	코로나19 휴관			
리딩룸	코로나19 휴관			

✓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간 2m 거리유지가 가능한 대연습실만 부분 대관(10인 이상 사용제한)

✓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중 연습실, 다목적실은 향후 수시대관 운영 고려

□ 대관 시간 및 요금안내

구분	[오전] 10:00-13:00	[오후] 14:00-17:00	[야간] 18:00-22:00	[1일 사용]
대연습실	20,000원	20,000원	20,000원	40,000원
중연습실	코로나19 휴관			
리 딩 룸	코로나19 휴관			

*타임별 대관 시간은 조정 불가합니다.

□ 대관 신청 자격 제한

○ 국·시비 및 재단의 타 지원 사업을 통해 연습실, 연습장소를 제공받는 단체의 경우

○ 강습 목적의 대관인 경우

○ 연습실 공간을 단체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불특정 다수의 참가자 통제가 불가능한 행사(예: 공연목적성 행사, 공개오디션 등)인 경우

○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타 대관자의 이용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경우

○ 대관신청 주체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지닌 경우

○ 기타 재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지침 및 참고사항

○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 및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용단체는 **집기 정리 및 폐기물 처리, 냉·난방기와 음향기기 전원 차단** 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 연습공간 내에서의 모든 **전열기구, 화기의 사용,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연습공간 내에 **뚜껑있는 물병을 제외한 모든 음료 반입 및 음식 취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대관 신청 후 **사용 전 대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후 이를 어길시 퇴실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지침 준수 여부는 기록**될 수 있으며 추후 정기 및 수시대관 심의 자료로 사용됩니다.

□ 코로나19 관련 필수 이용 지침

○ 발열 및 호흡기증상,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신 분의 이용을 금지합니다.
○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코드) 또는 수기명부 작성을 필수로 진행합니다.
○ 출입 시 발열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7.5℃이상 이용불가)
○ 출입 시 공간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신 후 입장 바랍니다.
○ 기기 사용 후, 비치된 소독용품으로 표면을 닦아주시길 바랍니다.
○ 이용 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고 신체접촉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한시적으로 휴게공간을 포함한 전 공간 내에서의 취식을 금지합니다.
○ 접촉 최소화를 위해 개인 사물함 이용이 불가합니다.
○ 매회 연습이 종료된 이후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입·퇴실 시각을 준수 바랍니다.

□ 환불규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관약관' 제 5조 임대 취소 및 임대료 환불에 의거
- 대관 신청일 15일 이전 100% 환불
- 대관 신청일 7일 이전 50% 환불, 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 불가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운영자의 귀책사유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 가능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설 휴관 시 휴관 일자에 한하여 100% 환불

□ 정기대관 문의

○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222
| 연 락 처 | 032-868-9162~3
| 홈페이지 | appci.ifac.or.kr
| 담당메일 | kyj129@ifac.or.kr

| 대관 바로가기 www.arko.or.kr/infra
| 기타 이용안내 www.appci.kr
032-868-9162~3
| 오시는 길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로222

【 인천청년문화창작소 시작공간 일부 안내 】

"시작공간일부는"

시작공간 일부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창작자들을 위해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인천 지역 청년 창작자들간의 접점을 만드는 네트워킹 사업과 청년 예술가를 지원하는 지원 사업, 청년들의 개인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문화 활성화와 건강한 청년문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①사무판 2F
시작공간 일부 운영진의 집무 공간

②회의판 2F
내부 회의 및 화상회의를 진행 하는 공간

③공유판 3F
시설 이용자들의 개인 및 공동 작업과 여가를 보내기 위한 공간인 동시에, 세미나 및 프레젠테이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④나침판 3F
인천 지역 활동가와 기획자, 예술가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큐레이션하는 아카이브 공간

⑤블랙홀
각종 강의를 진행하거나 시청각 미디어 시연 및 안무, 연기 등을 연습할 수 있는 활동 공간

"시작공간일부의 시범사업은"

○ 워크숍
- 시작공간 일부에서 펼쳐지는 보다 쉬운 워크숍!
  애드쉽, 디자인쉽, 애드쉽, 비디오쉽 등으로 이루어져, 초기 청년 예술가를 위한 창작물의 기록, 정리, 홍보 교육을 통한 청년창작자들의 창작역량강화를 지원합니다.

○ <나알람> PT데이
- 창작의 바다를 누비는 항해자들의 생존 신호 '나알람'
  '나알람'은 인천 지역 청년 창작자들의 활동을 프레젠테이션 하며, 창작물 발표의 기회가 한정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쉽사리 잊혀지는 열악한 인천 창작 생태계에서 서로의 생존을 살펴보고 안부를 나누기 위한 자리입니다.

○ 항해일지
- 인천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 기획자, 예술 활동가의 출판기록물을 아카이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증받은 출판기록물을 인천청년문화창작소 나침반에 아카이빙하고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어쩌면 기획일지 몰라
- 문화기획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나 초기 청년 문화기획자를 대상으로 문화기획 기초 교육을 제공하고 기획을 지원하는 초기 기획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획을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초기 기획자 여러분의 '어쩌면 기획일지 모르는' 아이디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작공간일부의 활성화사업은

○ 인천청년별별학교
- 청년문화를 선도하는 감각적인 청년기획자를 위한 청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준비, 입학, 강의, 실전기획, 졸업의 5단계를 거치는 청년문화예술학교입니다. 러닝메이트의 멘토링과 다양한 워크숍, 문화예술기획강의, 토크콘서트 등으로 청년문화예술기획자를 지원합니다.

○ 인천청년한달레지던시
- 인천 청년 한달레지던시는 인천 지역에서의 레지던시 경험을 통해, 해당지역 청년의 삶을 이해하고, 지역과 연계된 청년 창작 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인천청년문화살롱
-인천청년문화창작소에서 준비한 2020 인천청년문화살롱은 '허심탄회'하게 운영 하였습니다. 낯선 타인이기에 더욱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청년 창작자 분들이 참여자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100
(전동 2-5) 시작공간 일부
전화 : 032-766-5975~8
팩스 : 032-766-5988
메일 : space1bu@naver.com
SNS : https://www.facebook.com/space1bu